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8 발의연월일: 2025. 5. 27.

발 의 자: 강대식 • 유용원 • 강선영

백종헌 • 이인선 • 김상훈

최은석 • 유상범 • 김용태

이양수 · 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에서"를 "안 또는 밖(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에서"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형의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 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제한) ① -----<u>안 또는 밖(제4호</u>에 해당하는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행위에 한한다)에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 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 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 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형의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 한다)을 위하여 제9조제1항제4 호를 위반하여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 지 가중처벌한다.